

14. 외래교수 관리 내규

제정일 : 2007년 9월 12일

폐 기 : 2020년 1월 22일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“ 본교”라 한다)의 외래교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외래교수라 함은 본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외래교수의 자격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- 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와 타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된 자
- ② 특수한 경우 전호의 자격에 미달되더라도 교육 및 연구업적과 현장경험의 전문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이의 경우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할 수 있다.

제4조(임용) 위촉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외래교수의 제반서류를 개강 1개월 전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검토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제5조(임용기간) 외래교수 임용기간은 학기단위로 한다. 다만, 대학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 및 재임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자격이 있더라도 외래교수로 임용할 수 없다.

- ① 본교의 신앙노선에 배치된 자
- ② 서류를 허위 기재한 자
- ③ 직전학기 수업평가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. 단, 외래교수의 수업평가는 전임교수의 수업평가에 준한다.

제7조(강의시간) 외래교수는 주당 6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.

다만,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정상을 참작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구비서류) 신규 임용된 외래교수는 다음 각 호1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재임용의 경우는 제외한다.

- 1.이력서(경력, 학력, 연구실적, 신앙관련 사항등)
- 2.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
- 3.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4.강의계획서

제9조(의무 및 권리)

- ① 임용된 외래교수는 본교의 학사력에 따라 담당과목의 강의와 성적평가 및 수강학생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외래교수가 전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장은 해임할 수 있다.
- ③ 외래교수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도서관 및 교내 시설 이용의 권리를 갖는다.

제10조(보수)

- ① 외래교수에 대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한다.
- ② 출강시간은 주별 배당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질병, 가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강은 강사료를 지급치 아니한다. 단 보강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③ 본교가 임의로 정한 시간에 출강치 않을 경우 강사료를 지급치 않을 수 있다.

제11조(외래교수의 관리) 외래교수의 관리는 교무처에서 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0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폐기일) 이 내규는 2020년 1월 22일부터 폐기한다.